

프랑스大學 敎수임용제의 特性

—外國의 大學敎授任用제도 園—

金 治 洙

(梨花女大 佛語佛文學科)

外國의 大學敎授任用제도

1. 대만의 大學敎授任用제와 質 관리
2. 日本의 大學敎員 任用制度
3. 競爭원리에 基한 美國의 敎수임용제
4. 獨逸大學의 敎수양성과 임용제도
5. 英國大學의 敎수公探와 엄격한 評價制度
6. 프랑스大學 敎수임용제의 特性

1. 序 論

프랑스의 대학제도는 최근 20여 년 동안 자주 개정·수정되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교수들 가운데 행정을 책임맡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행정을 맡은 교수들도 법령집을 읽고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물어써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600년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다루는 제도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오늘날의 사회 자체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이라

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保守性和 進取性的의 조화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최근에도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새로운 개선안이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수명은 敎育制度 改善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짧아진다고 평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도 자세히 살펴 보면 고등학교에서 라틴어와 고대그리스어 대신 영어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와, 대학 1~2학년에서 순수학문적 교육보다는 實用的 敎育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특히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의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취직하기 쉬운 실용적 분야로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조항이 雜素條項이라고 하여 학생들의 시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이 1~2학년 과정인 기초과정(DEUG)에서 첫 해에 50% 이상 낙제하고 상당수의 학생이 4~5년씩 걸려서 마친다는 사실, 3학년 과정인 학사과정(Licence)에서도 50%가 첫 해에 실패하고 4학년 과정인 석사과정

(maîtrise)까지 마치는 데 7~8년씩 걸린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학과와 전공 선택을 잘못된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도중에 전공을 實用的인 분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의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저학년에서부터 지나치게 선별하려는 의도라고 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 문과학생에게 필수적인 라틴어와 희랍어 공부를 하는 대신 영어를 선택하게 하려는 것은 현실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학이나 철학 공부를 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순수학문을 등한시한다는 비난을 의식하여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원을 5,000명, 대학교수 정원을 7,000명 증원할 계획까지 이 개혁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부 교수들까지 가세한 反對運動 때문에 개혁안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다.

2. 教授任用制度

프랑스 대학의 교수 임용제도는 교육제도 자체의 개정과 함께 수 차례 개정되었다. 지금의 임용제도는 1984년 6월 6일에 개정된 법령에 준하고 있다. 즉, 그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직급이 조교(assistant), 전임강사(maître assistant), 조교수(maître de conférences), 교수(professeur)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84년의 법령에 의해 현재는 조교수(maître de conférences)와 교수(professeur)의 두 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직급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 혹은 경력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복잡하다.

1) 教授養成過程

교수란 원래 어떤 기관이나 제도에 의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수가 될 수 있는 資質과 資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교사자격시험(agrégation)에 합격한 사람(agrégé)을 교수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훨씬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敎師資格試

驗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카페스(CAPES)로 2급정교사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아그레가시옹(agrégation)으로 1급정교사 자격이다. 두 가지 자격시험 가운데 하나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되고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과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특히 1급정교사 자격시험 합격자(agrégé)는 고등학교 교사로 임명된 다음, 연구 경력이 쌓이면 대학교수로 임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처음에는 지방의 작은 대학에 채용되었다가 연구와 교수 업적이 쌓이면 큰 대학에 임용되고 더욱 알려지면 파리대학의 교수로 진출하기도 한다. 또 이들 아그레제들 가운데 전공 분야가 고등학교 교과목에 없는 '의학', '법학' 등의 과목 합격자들은 직접 대학교수로 채용된다. 아그레가시옹은 그 자체가 대단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합격자는 이미 교수가 된 다음에도 자신이 '아그레제'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교수들과 구별되고자 한다. 또 신입 채용시에는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아그레제'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이점을 갖게 된다.

프랑스에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은 博士學位 소지자라는 자격이다. 프랑스의 박사학위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요구하지 않지만, 國立研究所의 연구원과 大學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프랑스의 박사학위에는 '제3기박사(Doctorat de 3^e cycle)', '국가박사(Doctorat d'Etat)', '엔지니어 디플롬(Diplôme de doctorat ingénieur)' 등이 있었으나 '84년 '新制博士(Doctorat nouveau régime)'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는 경우는 이 세 경우를 모두 지칭하며 분야에 따라서는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위나 외국 학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전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연구자나 교육자로서 經歷을 쌓는 일이다.

① 연구자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研究機關의 연구그룹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연구기관은 국립과학연구소(CNRS)가 대표적 기관이고, 그 산하에 무수히 많은 연구센

터가 있으며 각 대학에도 공인받은 연구소들이 많이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모두 국립이기 때문에 이들 연구소도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연구소에는 대학의 전임교수가 책임자로 있고 주요 직책도 전임교수가 맡지만, 일반 연구원들은 대학의 전임교수를 꿈꾸는 미래의 학자들이다. 이들은 그 분야의 책임자로 있는 교수가 학위를 마친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인정할 경우 임명된 사람들이다.

②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교(assistant)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졌다. 단 하나의 예외로 高等師範學校(Ecole normale supérieur) 졸업자가 지방할 경우 조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교가 곧 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경력을 쌓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수 지방자들은 講師 생활을 통해서 교수 경력을 쌓는다. 강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시간강사(chargé de cours), 보조강사(répétiteur), 어학강사(lecteur) 등이다.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의 教授會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들 강사들은 대개 2년 계약기간으로 수업을 맡게 되고, 급료는 과목 수에 따라 지급되며, 방학중에도 지급된다. 이에 비해서 연구원의 급료는 연구규모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은 어떤 기관이나 집단에서 특별히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資質과 資格을 갖추기 위해 교수를 지망하는 사람 자신이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자신의 전공 분야를 1확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각 대학이나 연구소, 특수학교 등이 대학교수의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전통이 깊은 프랑스의 경우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 때문에 高等師範學校 출신이 우대를 받고 위에서 설명한 연구와 교수 경력을 쌓는 사람이 유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미셸 푸코(M. Foucault), 레비 스트로스

(Levi-Strauss), 마르트(R. Barthes)처럼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다른 경력으로 대학교수가 된 경우도 흔하다.

2) 新任教授의 任用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國立인 프랑스의 경우, 한 사람의 신입교수를 임명하는 과정은 대개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어느 학과에서 교수를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增員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학과 교수회의 이름으로 소속 대학 총장에게 증원 사유를 덧붙인 증원신청서를 제출한다. 총장은 그 서류를 자기 대학의 學術審議會(Conseil Scientifique de l'Université)에 보내고 학술심의회에서는 增員의 妥當性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한다. 총장은 그 인정서와 함께 증원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산하에 있는 全國大學審議會(Conseil national des Universités)에 증원신청을 검토하게 한다. 전국대학심의회는 각 대학에서 추천한 각 분야의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교육부의 주요 大學政策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전국대학심의회가 증원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증원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을 일반에게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격자 명단(liste de qualification)'에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서 신입교수를 채용한다. 지난 '84년 6월 6일에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금년 1월 30일 의결된 시행령에 의하면, 올해 3월 17일 이전에 자격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만이 금년도 신규 채용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임교수의 資格者 名單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

① 조교수(maître de conférences)의 자격자 명단에 등록하기 위해서 현재 조교—구제도 아래서 임명된 사람은 그 제도가 없어져도 조교의 직책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고등사범학교 졸업자로서 임명된 조교도 그대로 조교 직책을 갖고 있다—이거나, 각종 강사, 연구원은 '92년 10월 1일을[기준으로 만 4년의 경력을 갖게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다음의 학위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국가박사(Doctorat d'Etat)
- 신제박사(Doctorat nouveau régime)
- 3기박사(Doctorat de 3^e cycle)
- 기술박사(Diplôme de docteur ingénieur)

이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나 이와 유사한 학위의 소지자는 전국대학심의회에서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신임 조교수 채용에 응모하기 위해서 자격자 명단에 제출할 서류는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 호적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우표를 첨부한 2매의 봉투, 학위 증명, 경력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를 두 벌씩 준비하여 지원대학을 통해서 한 벌은 지원대학이 소속된 담당교육청장(Recteur d'Académie)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 벌은 전국대학심의회에 해당 전공 분야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특히 전국대학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이력서에 기재된 연구실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저서, 연구논문, 연구실적 등)를 골라서 1벌씩, 학위 소지자는 학위심사위원장의 심사보고서 사본, 연구 지도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추천서 등이 첨가되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은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해당 학과에서 신임 조교수를 뽑게 되면 자동적으로 후보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자 명단에 등록할 때 자신의 지원대학과 전공 분야를 명시해야 한다. 프랑스의 전국대학심의회에는 모두 56개의 전공 분야가 명시되어 있고, 각 분야에는 권위 있는 교수들이 위원으로 있다.

교수 증원이 승인되면 총장은 해당 학과 교수회의 혹은 전체교수회에 신임 조교수 선정을 요구한다. 신임교수를 선정하는 교수회의에 참석하는 교수들은 모두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 사본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여 각 후보자가 밝히는 研究計劃과 抱負를 듣고, 전국대학심의회 심사위원들의 業績審査 결과를 총장을 통해서 보고받는다. 전국대학심의회는 전공분야 위원들 가운데 세 사람을 지명하여 연구실적과 제출 서류를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과 해당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다. 대부분 교수회의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재적 과반수)를 획득한 사람이 신임교수로 채용되지만, 2차 투표에

서는 다득표로 선정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소르본느대학(파리 4대학) 같은 경우는 해당학과 교수회의에서 신임교수를 뽑지만, 사회과학원대학(É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 Sociales) 같은 곳에서는 전체교수회의에서 신임교수를 뽑는다. 일단 전임교수로 선정된 후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65세까지 완벽하게 신분보장을 받는다.

② 교수(professeur)의 자격자 명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교수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똑같이 구비하여 제출하되, 여기에 '후기박사'에 해당하는 '후속연구과정수로(habilitation)'라는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즉, 어떤 연구기관이나 실험실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밖에는 조교수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3) 昇進制度의 運用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프랑스의 교수 직위는 조교수와 교수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조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음 임용될 때부터 조교수 모집에 응모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조교수로 있게 되고, 만일 교수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응모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교수와 교수 사이에는 연계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교수 직급 안에 여러 등급이 있고, 교수 직급 안에도 여러 등급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승진만 성립되는 것이다.

① 일반적으로 조교수에는 A급 조교수와 B급 조교수가 있는데 A급은 5단계, B급은 3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신임 조교수로 임명되는 사람은 B급 조교수 최하위 단계에서 출발한다. 대개 1단계 승진에 2년이 걸리기 때문에 B급 조교수 최상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4년이 경과하면 된다. 또 A급 조교수의 최하위에서 최상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8년이 지나야만 한다. 이 점에서 승진이 年功制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급 조교수에서 A급 조교수로 승진하는 것은 연공제가 아니라 研究實績制이다. 따라서 B급에서 A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저서, 연구논문, 실험·실습 보고서 등을 전국 대학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② 교수는 B급, A급, 특급 교수 등으로 구분된다. B급은 2단계, A급은 5단계, 특급 교수는 2단계의 등급이 있다. 교수의 경우도 B급, A급, 특급 내부에서의 승진은 2년마다 한 등급씩 승진한다. 그러나 B급에서 A급, A급에서 특급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학심의회 심사의 통과를 통과해야 된다.

4) 停年保障과 退職

프랑스의 대학에는 재임용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입교수로 임용되는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일단 임용된 다음에는 65세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프랑스에서는 대학교수도 政黨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단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정당에 가입해도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

대학교수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5세이지만, 원하는 사람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후임자를 지명해서 자신의 학문을 계승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정년을 68세까지 연장하여 65세 이후에는 강의하지 않고 논문만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3. 結 論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대학에는 특별한 인사관리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입교수의 선발은 教授會議에서 맡고, 교수에 대한 評價나 대학의 주요 안건은 全國大學會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전국 대학심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러나 막상 이 기구의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를 만났더니 그 교수의 불평이 대단했다. 자신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研究와 教授를 위해 대학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 많은 안전과 연구 업적을 심의하기 위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의 임기만 끝나면 다시는 말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한 교수 임용제도는 대단히 복잡하고 교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소르본느대학의 유명한 언어학자가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면서 후임으로 지방대학의 언어학자를 데려 왔다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 보았더니 은퇴한 선임자나 그 후임자 모두가 유명하고 대학 안에서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국대학심의회나 언어학과 교수회에서 아무런 반대없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제도가 아무리 엄격하고 객관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잘못 운용하면 나쁜 제도가 되고, 잘 운용하면 좋은 제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보다 객관적인 교수 임용제도를 갖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惡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그 제도를 악용하면 자기 대학만 더 낙후된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公正하게 운용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대학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社會 전체에 부정과 비리가 사라질 때 대학의 교수 임용제도에도 부조리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